의 안	: 번	호	제582호		
의		결	2024.	• •	
연	월	일	(제	회)	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 정 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5월 30일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정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2

발의연월일: 2024년 5월 30일

발 의 자 : 김정일, 이상정, 박봉순,

안치영, 안지윤, 이상식,

조성태

1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'보훈명예수당'의 지급대상 범위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함으로 국가를 위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헌신한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,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여 규정 함(안 제7조2)

3. 조례안 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O 관계법령 : 붙임

O 비용추계 : 붙임

O 협 의 :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

○ 조례안 예고 : 예고 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·제3호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보훈명예수당) ① 도지사	제7조의2(보훈명예수당) ①
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	
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람에	
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	
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할	
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
	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
	호・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
	<u>자</u>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국가보훈 기본법

- 제2조(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,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.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· 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 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예우 및 지원의 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.

□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(盲揚)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특수임무"란 특별한 내용·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.
 - 2. "특수임무유공자"란 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 - 1.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: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(특수임무수 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)
 - 2. 특수임무부상자: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(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 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 된 사람
 - 3. 특수임무공로자: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
- 제5조(예우 원칙)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,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.
- 제6조(등록 및 결정) ①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(이하 "보상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,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"보훈심사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국가를 위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명예 선양 및 복지향상 도모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

3. 관련조문

○ 조례안 제7조2(보훈명예수당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보훈부에 등록된 도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산출(47명) * '24.4월기준
- 나. 추계 결과 :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164,760천원 소요 예상
 - ('24년) (당초 49명imes30천원imes4월)+(1회추경 49명imes60천원imes8월)] = 29,400천원
 - ('25년 이후) 47명 × 60천원 × 12개월 = 33,840천원
-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,	에 입						
,	세 출	29,400	33,840	33,840	33,840	33,840	164,760
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		29,400	33,840	33,840	33,840	33,840	164,760
	재원 조달						
	소 계						
의존 재원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29,400	33,840	33,840	33,840	33,840	164,760
	지방세	29,400	33,840	33,840	33,840	33,840	164,760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구・군비							
기 타 (차입금, 만자, 예비비 등)							